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1월 05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옥, 김혜영, 남창진,  
송경택, 윤영희, 이봉준,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최유희, 최진혁, 황철규  
의원(12명)

### 1. 제안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7. 18.)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6.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7. (생략)</p> <p>8. 「<u>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9. ~ 16. (생략)</p> <p><u>&lt;신설&gt;</u></p> <p>1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2조(대관료) ①·② (생략)</p> <p>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u>서울특</u></p>	<p>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7. (현행과 같음)</p> <p>8.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 -----</p> <p>9. ~ 16. (현행과 같음)</p> <p>17.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67조의 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8. (현행 제17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대관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서울특별</u></p>

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다.

④ · ⑤ (생략)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관람료의 면제)제1항제17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결과 현재 제4조(관람료)제1항에 따라 관람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현행 동 조례 제4조(관람료)제2항1)에 따라 박물관<sup>2)</sup>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유선 조사 결과, 현재까지 관람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드물기 때문에 예외로 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제4조(관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총 6개 박물관)